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1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9월 2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구분에 따라 소변기 “칸막이”를 “가림막”으로 수정함.
-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의 의무설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 중 경과규정을 삭제함.

2. 주요내용

- 남자화장실 소변기의 “칸막기”를 “가림막”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6호).
- 부칙의 시행일 중 경과규정을 삭제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6호 중 “칸막이”를 “가림막”으로 하고, 부칙을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</p> <p>1. ~ 5.</p> <p>6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<u>칸막이를 설치하여</u>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<u>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7. · 8.</p>	<p>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생략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<u>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7. · 8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생략)</p> <p>1. 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<u>가림막을</u>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7. · 8. (개정안과 같음)</p>
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<u>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<u> 공포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생략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<u>칸막이</u>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제4조(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<u>가림막</u>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부 칙	부 칙
<p>이 조례는 <u>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이 조례는 <u>공포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.</p>